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	
	배포일시	2021. 7. 22. (목) /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	담당자	·팀장 전성배, 사무관 박정곤 · 김경하 ·☎ (044) 201-331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'21. 7. 22.) >

◆ ‘집주인 실거주 확인’ 세입자들 골머리

-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한 종전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졌으나, 일부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를 미숙지하여 열람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

□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(‘20.7.31)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계약 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

-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,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□ 이에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*(‘20.9.29)하였으며,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* 관련 규정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,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호

** 열람신청 절차 :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(임차인, 규칙 별지 제3호서식) → 주민센터 접수 → 확정일자 열람(임차인)

□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 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하였으며,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박정곤 사무관(☎ 044-201-33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